



미국, 연금법 개정(SECURE 2.0 Act)

김혜란 연구원

요약

고령사회에 진입한 미국은 노후 보장을 위하여 사적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2019년 은퇴 후 노후자금 확보를 위해 연금법을 개정(SECURE Act)하고, 2022년 한 차례 더 연금법을 개정(SECURE 2.0 Act)함. SECURE 2.0 Act는 퇴직연금 참여 및 연금 저축액 확대를 위해 직장인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및 납입액 자동 증액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은퇴 후 소득 보전을 위해 최소의무인출 나이의 점진적 상향 및 적격장수연금 투자금액 개정 등을 포함함

- 고령사회에 진입한 미국은 2021년 노인 빈곤율이 전 연령층에서 유일하게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노인 1인당 생산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를 위해 공적연금 외에 사적연금을 활용하고자 함¹⁾
 - 2019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5,410만 명으로 전체 인구 중 16%를 차지하여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30년에는 7,310만 명으로 인구의 21%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노인빈곤율은 10.9%이며,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소득원천은 공적연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노인빈곤율은 2020년 8.9%에서 2021년 10.9%로 증가하였으며, 그중 80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12.9%로 더 높았고, 공적연금 외에 근로소득, 연금 및 퇴직연금 소득이 각각 19.3%, 17.2%로 그 뒤를 따르고 있음²⁾
 - 2020년 생산가능인구 3.6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했다면,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4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며, 노인 및 유소년 부양비 또한 2020년 64%에서 2060년 76%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³⁾
- 2019년 미국은 은퇴 후 노후자금 확보를 위해 연금법을 개정(SECURE Act)하고, 소규모 기업도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하게 하고, 최소의무인출(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이하, 'RMD') 나이를 상향함
 - 노후를 위해 미국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은퇴 준비 방법인 직장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대상으로 연금법을 개정하였으며,⁴⁾ 2020년 미국의 생산가능인구 중 DC형 퇴직연금과 IRA를 각각 34.6%, 18.2% 보유하고 있음⁵⁾
 - SECURE(Setting Everything Community Up for Retirement Enhancement) Act는 소규모 기업도 퇴직연금 가입(PEPs)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연금 RMD 나이를 72세로 상향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짐
 - RMD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 계좌에서 최소로 인출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납입 시 세금 공제를 받는 퇴직연금에 적용되며, 미뤄놓았던 세금을 퇴직금을 인출할 때 인출액에 따라 계산함

1) PRB(2020. 2. 19), "The U.S. Population Is Growing Older, and the Gender Gap in Life Expectancy Is Narrowing"

2) U.S.Census Bureau(2022. 2. 8), "Income Sources of Older Households"

3) U.S.Census Bureau(2018. 3), "Demographic Turning Points for the United States "

4) 이종은(2020. 2. 4), 「미국 연금법 개정(SECURE Act)의 특징과 의미」, 『자본시장포커스』, 2020-04, 자본시장연구원

5) U.S.Census Bureau(2022. 8. 31), "New Data Reveal Inequality in Retirement Account Ownership"

○ 퇴직연금 참여 및 연금 저축액 확대를 꾀하기 위하여 2022년 또 한차례 연금법을 개정(SECURE 2.0 Act)하였으며⁶⁾, 직장인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및 납입액 자동 증액 등을 신설함⁷⁾

- SECURE 2.0 Act는 SECURE Act 발효 이후 퇴직 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이를 반영하여 개정됨
- 2025년부터는 고용주가 2023년 이후 신규 설립된 퇴직연금을 제공할 경우 종업원을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며, 최초 자동 납입액은 직원 급여의 3~10%로 설정하고 매년 1%씩 증액할 수 있으나 최대 15%까지 가능함
 - 미국인들은 은퇴 저축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은퇴연령을 맞이하는 이유를 고용주로부터 퇴직연금을 받는 기회가 적고, 제안받은 직원들의 참여도 저조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등은 제외됨
- 이외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기여금 지원 신설, 계약직이나 임시직 직원의 직장인 퇴직연금 가입 조건 완화 그리고 학자금 융자상환금의 퇴직연금 납입액 인정 조항 등을 신설함
 - 2027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Saver's Match를 통해 직장인 퇴직연금(401(k)) 또는 IRAs 납입액 중 최대 2,000달러의 50%를 연방정부에서 연금 크레딧으로 납입해 주는데, 납입 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은퇴계좌에 한함
 - 시간제 직원의 경우 현행법은 3년이나 앞으로는 2년 동안 연속으로 최소 500시간의 근무를 하면 401(k)나 403(b)와 같은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 2024년부터 직원이 자신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대신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경우 상환액을 퇴직연금 납입액으로 인정하여 고용주의 기여금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SECURE 2.0 Act는 은퇴 후 소득 보전을 위해 RMD 나이 점진적으로 상향, 적격장수연금(이하, 'QLACs') 투자금액 개정 그리고 퇴직연금 인출 예외 조항 등도 담고 있음

- RMD 나이를 2023년 73세, 2033년에는 75세로 상향하고, RMD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50%에서 25%로 낮춤
 - RMD 나이 상향은 고령화 시대에 은퇴 연령을 미루며 일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어 근로소득세에 연금소득세가 가중되는 부담을 덜기 위함이며, 75세 이상의 근로자 수는 2030년까지 거의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QLACs의 보험료는 기존에 IRAs 또는 401(k) 계정 잔액의 25%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를 폐지하고, 2023년부터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을 최고 20만 달러로 규정함
 - QLACs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고 80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으로 장수리스크를 대비하는 상품임
- 개인의 비상 상황 및 자연재해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납부를 위한 퇴직연금 긴급 인출 규정을 담고 있음
 - 개인 또는 가족이 불치병에 걸렸거나 죽음이 예견된 비상 상황에는 매년 1,000달러, 가정폭력 피해자일 경우 최대 10,000달러 그리고 자연재해로는 최대 22,000달러까지 벌금 없이 조기 인출 할 수 있음
 - 2026년부터는 고용주가 제공한 퇴직연금에서 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위해 조기 인출에 따른 벌금 없이 연간 최대 2,500달러를 인출할 수 있음
 - 미국인의 약 55%는 장기요양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25%는 심각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50년에는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인구가 현재 1,400만 명의 두 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음⁸⁾

6) WTW(2023. 1. 24), "SECURE 2.0 Signed into Law as Part of 2023 Federal Spending Package"

7) Senate Finance Committee(2022. 12. 20), "SECURE 2.0 Act of 2022"

8) CNBC(2021. 11. 8), "Aging Baby Boomers Raise the Risk of A Long-term-care Crisis in the U.S."